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230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도뷰엔빌더블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1.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 삼도주택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엘앤씨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4. 22.

판결 선고 2016. 5. 13.

제 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합10180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는 2,972,903,9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와 각자 위 돈 중563,934,7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원고는 피고 삼도주택 주식회사에 1,223,378,7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N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 제3면 제15, 18행, 제6면 제21행(각주 부분), 제8면 제9, 12, 15 내지17행, 제14면 제12, 17행, 제15면 제4, 6, 7행, 제16면 제3, 14, 16행의 각 '피고 대한 주택보증'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5면 제18행, 제10면 제2, 18행, 제11면 제8, 16행, 제12면 제4, 14행의 각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 제1심 감정인 A의 하자감정 결과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제10면 제2, 18행, 제11면 제9, 17행, 제12면 제5, 14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나머지를' → 나머지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수분양자에 따른 보증책임' →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에 비추어' →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회신 결과에 비추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제12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 → 제1심 법원의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의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의 '시공되도록' → 시공하도록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8행, 제16면 제1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 → 제1심 판결선고일

3. 피고 삼도주택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삼도주택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015. 4. 28. 1,223,378,7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이 피고 삼도주택의 항소취지와 같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삼도주택에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삼도주택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삼도주택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삼도주택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심연수, 판사 정총령